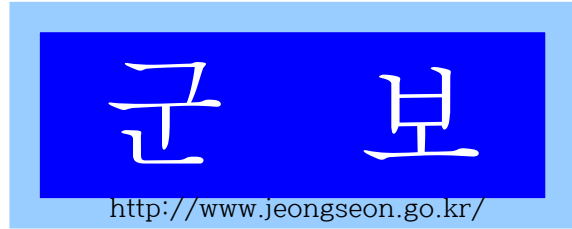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63호 2018. 11. 12.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655호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9
- 정선군 조례 제2656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24
- 정선군 조례 제2657호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37
- 정선군 조례 제2658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40
- 정선군 조례 제2659호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44
- 정선군 조례 제2660호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52
- 정선군 조례 제2661호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64
- 정선군 조례 제2662호 정선군 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68
- 정선군 조례 제2663호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79
- 정선군 조례 제2664호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89

○ 정선군 조례 제2665호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99
○ 정선군 조례 제2666호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 정선군 조례 제2667호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10
○ 정선군 조례 제2668호 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15
○ 정선군 조례 제2669호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18
○ 정선군 조례 제2670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 정선군 조례 제2671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9
○ 정선군 조례 제2672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132
○ 정선군 조례 제2673호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41
○ 정선군 조례 제2674호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	14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 10.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55호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47조제2항”을 “「수도법」 제47조제2항”으로, “간이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로,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적정”을 “적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는 경우에는”을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개·보수”를 “개수·보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사결과를 3년간”을 “검사 결과를 5년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개·보수하여야”를 “개수·보수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전단 중 “개·보수”를 각각 “개수·보수”로 하며, 같은 항 전단 중 “관련 된”을 “관련된”으로,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0조 중 “수립하여”를 “세워”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선군 수도급수조례」”를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수도법 제47조제2항</u>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간이상수도</u> 와 <u>소규모급수시설</u> (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u>필요</u>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수도법</u> 」 제47조제2항 ----- -- <u>마을상수도</u> 와 <u>소규모급수시설</u> ----- ----- ----- ---- <u>필요</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시설단위”란 1개의 시설을 이용하는 <u>부락</u>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4. ~ 6.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u>마을</u> ----- -----.
제3조(정비계획수립) ①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규모수도시설을 <u>적절</u> 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u>하는 경우에는</u>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정비계획수립) ①----- ----- --- <u>적절</u> ----- ----- ----- --. ②----- ----- <u>할 때에는</u> ----- ----- ----- -----.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일체를 관장한다.

② (생략)

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

제4조(시설의 관리) ①-----
----- 개수·보수-----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질검사) ①-----

----- 검사 결과를 5년
간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점검) ①-----

----- 1회 이상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유지보수) ①-----

----- 개수·보수하

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인가 및 폐지) ① (생략)

②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 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

여야 --. -----
----- 개수·보수 -----
-----.

②----- 개수·보수-----

----- 관련된 -----
----- 미리 -----
-----.
-----.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

----- 세워 -----
-----.

제11조(시설의 인가 및 폐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미리 -----

-----.

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13조(요금징수) ① (생 략)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요금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

제14조(관리비용) ①-----

않는 -----

--. -----
-----.

②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 정비,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변경,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반영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를 순 우리말로 변경(안 제2조제3호)

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변경(안 제6조제1항)

- 수질검사 결과 기록부 3년간 보존 ⇒ 5년간 보존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반영

-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 10. 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56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3조 본문 중 “관할구역중”을 “관할구역 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 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를 “관계 법령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얻”을 “받”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적치하거”를 “쌓아두거”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태만히 함”을 “게을리함”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취득전”을 “취득 전”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2호 중 “사유없”을 “사유 없”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3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3조 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증장애자”를 “중증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자녀가구(「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자녀 중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인 가구)인 경우

제40조제2항 중 “부과한다”를 “부과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에 의하여 요금
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
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
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을 적
용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급수 배
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 계량
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40조제5항 중 “경우 감면한다”를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상이한”
을 “다른”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정선군 지방 공무원 제안규칙」규정을 준용한다”를 “「정선군 지
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한 누수로 수도사용자가 해당 급수시설을 보
수보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누수량을 감면할 수 있다.

1.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로 누수지점이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
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산출하여 사용수량으로 한다.

2.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노출된 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와 동결 우려로 수돗물을 흘리는 경우 등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말 등 부득이 급수관로 동결예방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 후 군수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사용수량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전단 중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를 “조정이나 징수에”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날부터 90일이내”를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 중 “6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한다.

제51조 중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 의”를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 의”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제 1 호]

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자	수용가번호		업 종	
	주 소		전화번호	
	성	수용가 명		
	명	신청인 명	생년월일	
신청내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관계 공무원 확인		위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성 명 : (서 명)		
「정선군수도급수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서류: 입증서류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 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1. (생략)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u><삭 제></u> 11. (현행과 같음)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u>관할구역중</u>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3조(급수구역) ----- <u>관할구역 중</u> ----- ----- ----- ----- -----.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u>1년이상</u> 종사자) 2. (생략)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 ----- ----- -----. 1. ----- ----- ----- - <u>1년 이상</u> -----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생략)

②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납부기한내 미납사유를 제출시에는 10일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생략)

②급수공사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해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일 내-----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3개월-----

-----.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받-----

공작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도 군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생략)

제25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생략)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
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
다.

④ (생략)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급수장치
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도 승계한다. 다만, 경
매나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급수중지와 폐전) ①·②
(생략)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쌓아두거-----

안 -----.

③----- 게
을리함-----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현행과 같
음)

②-----

----- 취득 전-----

-----.

제28조(급수중지와 폐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 5. (생략)

④ (생략)

제29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생략)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본조제 목개정 2012.09.07.>

제32조(요금의 조정)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가산금 등) ①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

-----.

1. (현행과 같음)

2. ---- 사유 없-----

3.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32조(요금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5일 이내-----.

제36조(가산금 등) ① <삭제>

<삭제>

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체납액이 30만원 미만 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39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 :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20,000원

2. (생 략)

3. 제43조 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 급수관구경 25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25,000원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다음 각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납부고지) ① -----

----- 휴대전화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제수수료) -----

-----.

1. 제6조제2항-----

2. (현행과 같음)

3. 제43조제2항-----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월 사용량이 10m³ 이상인 경우는 10m³을 경감하고, 10m³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단,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정용에 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 5. (생략)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7. (생략)

<신 설>

②제1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가구별 사용량 계측이 불가할 경우 가구당 10m³을 감면하여 공용계량기에 부과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
- 중증장애인
3. ~ 5. (현행과 같음)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 (현행과 같음)

8. 다자녀가구(「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자녀 중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인 가구)인 경우

②-----

----- 부과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

③ (생 략)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는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만 적용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고지 부족분은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감면한다.

⑥ (생 략)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

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급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 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⑧ ~ ⑩ (생 략)

제43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60일간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 10. (생 략)

11.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1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4조(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43조(정수처분) 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 -----

- 기일 내 -----

2. ~ 10. (현행과 같음)

11.-----
다른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발견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정선군
지방 공무원 제안규칙」 규정
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제46조(상수도시설훼손 및 누수
등의 책임) ①·② (생략)

③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
닌 사유로 인한 누수로 수도사용
자가 해당 급수시설을 보수하였
을 때에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일
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을 따른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상수도시설훼손 및 누수 등
의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
닌 사유로 인한 누수로 수도사용
자가 해당 급수시설을 보수보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누수량을 감면할 수 있
다.

1.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산
출하여 사용수량으로 한다.

2.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노출된 수
도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와 동결
우려로 수돗물을 흘리는 경우 등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말 등
부득이 급수관로 동결예방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 후 군수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제48조(급수장치의 철거) ①·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
라서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50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
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
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
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
다. <후단 신설>

평균사용량을 사용수량으로 한다.

제48조(급수장치의 철거)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0조(이의신청) ①-----
----- 조정이나 징수에 ---
----- 사람은 -----
- 날부터 90일 이내-----
----- . 또한, 과태
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
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
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 60일 이내-----
----- .

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
-----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
----- . 다만 과
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안이유

법률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체납요금 납부 연대책임 조항 삭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어린이집, 다자녀가구)신설하고, 기타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문 삭제(안 제29조제2항)

⇒ 수도 사용요금 납부에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 삭제.

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 제40조제1항제8호)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자녀 중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인 가구에 10㎡ 감면

다. 요금감면 취소 규정 명확화(안 제40조제2항)

⇒ 요금감면 대상가구가 주소변경 미 신고 시 감면을 취소토록 규정

라.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 외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조항 추가(안 제40조제4항)

⇒ 「유아교육법」 제7조에 해당하는 유치원, 「영·유아교육법」 제10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만 적용토록 추가.

※ 일반용 1단계 요금(1㎡당 / 960원) : 1㎡~50㎡까지 적용

마. 상수도 누수 복구 시 감면규정 세분화(안 제46조제3항의1호,2호)

바. 지방세 징수예의 등을 준용토록 되어있는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변경(안 제51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반영

- 안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4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8조, 제50조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57호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정선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정선군”으로, “질높”을 “질 높”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홈페이지”라 함은”을 ““홈페이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를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민원사 무중”을 “민원사무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6호 중 ““비밀번호”라 함은”을 ““비밀번호”란”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인터넷시스템구축및홈페이지운영관리”를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공한 다”를 “제공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치단체장과”를 “군수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 지역주민”을 “그 밖에 주민”으로, “알권리”를 “알 권리”로, “자치단체장이”를 “군수가”로, “정보제 공”을 “정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담당부서”를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로,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를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로 한다.

제4조 중 “시스템운영부서”를 “시스템 운영부서”로,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홈페이지관리부서”를 “홈페이지 관리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로, “게시하여 야 하며 정보제공시”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게시기간을”을 각각 “게시 기간을”로, “한 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게시판”을 “해당 게시판”으로, “한 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2회이상”을 “2회 이상”으로, “내용을 1일 2회이상”을 “내용을 1일 2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중 “경 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를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홈페이지를통한사이버민원실운영”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을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터넷 민원”을 “전자민원”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로,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은”을 “전자민원창구는”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공개 는”을 “공개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한하 며”를 “한하며”로, “처리기간”을 “처리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자치단체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개대상민원”을 “공개대상 민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 정 · 운영”을 “지정 · 운영”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를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이용자 와”를 “이용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홈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5장 전자우편ID보급”을 삭제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외국어홈페이지운영”을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홈페이 지”를 “홈페이지”로, “홍보효과”를 “홍보 효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단체장은”을 “군수는”으로, “지정 ·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를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개인정보보호및보안관리”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하여 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스템운영부서”를 “시스템 운영부서”로, “강 구”를 “강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스템운영부서”를 “시스템 운영부서”로, “변동자료 를”을 “변동자료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u>	<u>정선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u> 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u>질높은</u>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정선군</u> ----- ----- - <u>질 높</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	제2조(정의) ----- <u>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u>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1. ----- <u>이란</u> ----- ----- -----.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2. ----- <u>이란</u> ----- ----- ----- -----.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 <u>홈페이지</u> ”란 ----- ----- ----- -----.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	4. “ <u>전자민원</u> ”이란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 제2조 ----- ----- <u>민원사무</u> <u>중</u> -----

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
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를 말한 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
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구축및홈페이지운영 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
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
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를 제공한 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
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 2. (생 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 및 게
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생 략)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
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
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

-----.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 제공한다.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전자민원창구 ---

4. 군수와-----

<삭 제>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주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알 권리 ----- 군수가

정보제공 --

③-----
-----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
----- 한다.

④-----
-----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
----- 1회 이상 -----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 관리부서-----

-----.

②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

-----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
----- 게시
기간을 -----
----- 게시 기간을 -----
----- 한다.

②-----

----- 어느 하나 -----
----- . -----
----- 해당 게시판 -----

-----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
----- 2회
이상 ----- 내용을
1일 2회 이상 -----
9. 그 밖의 -----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

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 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 경우에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단서 삭제>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전자민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
-----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②전자민원창구는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공개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 한하며 -
----- 처
리 기간 -----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

-----.

② 전자민원창구-----

----- 군수가 -----
-----.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공개대상 민원-----
-----.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 지정·운영-----
-----.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 이용자와 -----

자 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
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
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
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
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
록 홈 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
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ID보급

제5장 전자우편ID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
D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
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
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
우편 ID보급) ①군수는 지역정
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
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운
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

②-----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 홈페이
지-----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홈페이지운영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자치단체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및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 홈페이지----- 홍보 효과

-----.

② (현행과 같음)

③군수는 -----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 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시스템 운영부서-----
----- 강구
-----.

②시스템 운영부서-----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 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
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
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
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관 련규
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변동자료를 --

----.

<삭 제>

제안이유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동일하게 하고 상위법률에 위배되는 조문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개정사항 반영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 수정(안 제2조, 제7조, 제8조, 제12조)
- 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사항 반영(안 제3조, 제16조)
- 다. 전자우편ID 미 보급 및 근거가 불분명한 조문 삭제(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58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준수하고”를 “지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 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타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장기간”을 “오랫동안”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타시군구”를 “다른 시군구”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불 예방 활동 근무에 필요한 피복 지원
9. 신임 이장 현판 제작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u>준수하고</u>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제3조(복무) ① ----- <u>지키고</u> ----- ----- -----.
② 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u>준수하여야</u> 한다.	② ----- 제2조제1항----- ----- ----- ----- <u>지켜야</u> -----.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u>장기간</u>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 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 <u>다른 지역</u> ----- ----- <u>오랫동안</u> ----- ----- -----.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타시군구</u> 이통장과의 문화·체육·결연 등 교류활동 지원	6. <u>다른 시군구</u>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u>산불 예방 활동 근무에 필요한 피복 지원</u>
<신 설>	9. <u>신임 이장 현판 제작 지원</u>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제안이유

이장 임무수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기진작 및 행정지원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산불 예방 활동 근무에 필요한 피복 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제8호)
- 나. 신임 이장 현판 제작 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제9호)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반영
 - 안 제3조, 안 제6조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59호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르신”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효율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한다.

③ 예방접종 과거력이 있는 어르신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1회 접종을 지원범위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백신비의 전액을 예방접종비용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군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제2항에서 같다)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보건소 담당의사는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예진표를 확인하고 해당 지원대상자를 예진한 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제7조(홍보) 군수는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및 절차 등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지원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비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때는 제외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
2.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때

제9조(기록·관리)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현황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8조 단서에 따라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도 그 사유와 일자 등을 포함하여 또한 같다.

제10조(피해보상)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원대상자에게는 해당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상범위 및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준용규정) 예방접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 방 접 종 실 시 대 장 (제9조 관련)

번호	피접종자 인적사항						예방접종 실시 내용					환수조치 불가사유
	사유	일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락처	접종명	백신 제조 번호	접종시 일시	접종자	예진 의사명	

제안이유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을 통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예방접종비용과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로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정의 (안 제2조)

- 어르신이란 정선군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인 자

다. 지원 및 대상(안 제4조)

- 지원대상자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 중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라. 지원범위 및 규모(안 제5조)

-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1회 접종 및 백신비의 전액을 지원

마. 환수(안 제8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때는 환수조치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60호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 의”를 “제1항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을 “사람은 사용예정일 7일 전”으로, “허가사 항”을 “허가사항”으로, “4일전”을 “4일 전”으로, “한 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접수후 3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를 “신청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정”을 “적절”로, “조치 를”을 “조치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2인이상일”을 “사람이 2명 이상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 한”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지체없” 을 “지체 없”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보수” 를 “개수·보수” 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다음 해” 를 “다음 해”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용기간중에” 를 “사용기간 중” 으로, “때에 는” 을 “때에는” 으로, “얻어” 를 “받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 상복구” 를 “원상복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비 용” 을 “비용”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태만히 하여” 를 “게을리하여” 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정한 금액을” 을 “그 손해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유 로” 를 “이유로”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 후단 중 “범위안” 을 “범위 안”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거 나” 를 “하거나” 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준용) 농민문화체육센터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 를 “조례의 시행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제3조(적용범위) ----- ----- ----- <u>각 호</u> -----. 1. · 2.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3. (생략)	제4조(기능) ----- <u>각 호</u>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의 관리) ① · ② (생략)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제1항의</u> ----- ----- <u>않는다.</u>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사용예정일 7일전까지</u>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u>허가사항</u> 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u>사용예정일 4일전까지</u> 사용취소·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등의 사용허가신청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 <u>사람은</u> ----- ----- ----- ②----- <u>사람은 사</u> <u>용예정일 7일 전</u> ----- ----- <u>허가사항</u> ----- ----- <u>4일 전</u> ----- ----- <u>한다.</u> ----- -----.

③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시설등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한 조치 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순위)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 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 4. (생략)

5.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 7. (생략)

제8조(사용허가 제한)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9조(시설의 개방) ①군수는 시설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물을 주민건강 증진을 위 한 체육활동 및 생활체육 활

③-----

---- 신청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

④----- 적절-----

----- 조치를 -----.

제7조(사용허가의 순위) -----

----- 사람이 2명 이상

일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 여러 사람

6. · 7.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 제한)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않는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시설의 개방) ①-----

----- 위한 ---

성화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각 시설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10조(개방제한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는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2. · 3. (생략)

제11조(사용시간) ①시설등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10월 ~ 다음해 3월 : 06:00부터 21:00까지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

-----.

②-----
----- 각 호-----
----- 사람이 -----
-----.

1. · 2. (현행과 같음)

제10조(개방제한등) -----
각 호의 어느 하나-----

----- 지체 없-----
-----.

1. ---- 개수·보수

2.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시간) ①-----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다음 해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①----- 사용기간 중 ---
----- 때에
는 ----- 받아 -----
-----.

②-----

----- 원상복구 --

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 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
의 파손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생 략)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
를 태만히 하여 시설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정
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훼손 또는 망실에 대
하여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
유 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
다.

④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행
사,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위탁관리) 군수는 지역의
체육진흥, 문화창달, 공공이익
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시
설관리공단 등에 시설 등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

-----.

③-----

----- 비용-----
-----.

----- 않는다.

제13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
음)

②-----
게을리하여 -----
----- 그 손해를 ---

-----.

③-----

----- 이유로 -----
-----.

<삭 제>

제14조(위탁관리) -----

-----.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관리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 나 장부·기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6조(준용)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는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범
위 안-----
-----.

제15조(위탁운영 관리감독) ①-----

----- 하거나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용) 농민문화체육센터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

제안이유

법률 위반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외래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 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 사용자가 시설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때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조문을 법률에 맞게 개정(안 제13조제2항)
- 나.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행사, 공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사용자가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된 조문은 지자체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 (안 제13조제4항)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휘 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
 -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61호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부수하여”를 “떨러”로 한다.

제3조제4호 본문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아니 한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입”을 “납부”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를 “세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립하여야”를 “세워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고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개·보수”를 “개수·보수”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9. 도·시 대표선수단의 대회 출전일 14일 이내 강화훈련(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선수단 포함)
10. 군이 후원하는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전에” 를 “미리” 로, “얻어야” 를 “받아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만일 원상복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적정” 을 “적절” 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수탁자는 각종 공공요금 등을 자체 납부하여야 한다” 를 “수탁자는 각종 공공요금 등을 자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기장에 한하여 전기료 기본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얻어” 를 “받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로 한다.

별표 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및 이용료(제10조 관련)

○ 정선종합경기장 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체육행사	97,000	126,000	
	일반행사	180,000	230,000	
	연습사용	90,000	114,000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체육행사	30,000	40,000	
	일반행사	60,000	80,000	
	연습사용 (단체)	6,000	6,000	2시간 기본/팀당
	연습사용 (개인)	2,000	2,000	2시간 기본
육상트랙	체육행사	38,000	51,000	
	일반행사	92,000	127,000	
	연습사용 (단체)	6,500	7,300	2시간 기본/팀당
	연습사용 (개인)	1,400	1,600	2시간 기본
체육관	체육행사	74,000	89,000	
	일반행사	138,000	198,000	
	연습사용 (단체)	81,000	91,000	2시간 기본/팀당
	연습사용 (개인)	1,000	1,300	2시간 기본
실외인라인장 (농구장 포함)	무 료			
테니스장숙소동	2인1실		4인1실	
	15,000		30,000	

※ 1일 기준

○ 정선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이용 구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경로	비 고
수영장	개인 월 정기이용	52,500	41,000	30,000	
	개인 일일이용	2,500	2,000	1,400	
	단체 일일이용	2,000	1,300	1,000	20명 이상
	수강료(주3회)	30,000	30,000	30,000	
	사용 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체 육 행 사	150,000		200,000	
	일 반 행 사	200,000		250,000	
체육관	사용 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체 육 행 사	74,000		89,000	
	일 반 행 사	138,000		198,000	
	연습사용(단체)	81,000		91,000	2시간기본
	연습사용(개인)	1,000		1,300	2시간기본
비 고	수영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회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 정선군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수량/ 단위	사용료	비 고
전 기	1 KW당	관허요금	기본요금 + (시간당사용요금 x 사용시간)
수 도	1 일	20,000	입장객 500명이하
		40,000	입장객 501~1,000명이하
		60,000	입장객 1,001~5,000명이하
		80,000	입장객 5,001~10,000명이하
		100,000	입장객 10,000명이상
샤 위	1인 1회	400	
마 이 크	1일 1대	5,000	
방송음향	1 일	40,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 체육시설물(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대시설 : 제1호 시설에 <u>부수하여</u> 설치된 각종 시설물, 주차장,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2. ----- <u>딸려</u>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단체입장”이란 <u>동일한</u> 단체의 구성원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단,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의 단체입장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4. ----- <u>같은</u> ----- ----- -----. -----.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	②----- ----- ----- ----- -----.

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생 략)

④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같음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 4. (생 략)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

6. · 7. (생 략)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납부-----

-----.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1. ~ 4. (현행과 같음)

5. ----- 여러 사람

6. · 7.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

제7조(시설의 개방) ①-----
----- 없으면 -----

-----.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 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⑤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변경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2. 3. (생략)

제9조(사용시간) ① (생략)

②수영장의 개장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②-----

----- 세워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세워야 -----.

제8조(개방제한 등) -----

----- 그 밖 -----

----- 알려야 -----.

1. ----- 개수·보수

2. 3.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장일(이 경우 <u>사전에</u>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 략)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u>사전에</u> 납부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u>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출전일 14일 이내 훈련</u> 3. <u>도·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출전일 14일 이내 강화훈련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선수단 포함)</u> 4. 5. (생 략) 5. <u>군이 후원하는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u> 6. 삭 제 7. <u>군이 후원하는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u> ②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 1. ~ 4. (현행과 같음) 5. ----- ----- <u>미리</u> ----- 제10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미리</u> -----.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4.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②----- -----
--	--

80을 경감 할 수 있다.

1.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 및 행사

2. (생략)

3.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학교의 체육대회

4. (생략)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대상자 단체 경기 및 행사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

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 노인 단체의 경기 및 행사

<신설>

<신설>

<신설>

③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8.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9. 도·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출전일 14일 이내 강화훈련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선수단 포함)

10. 군이 후원하는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삭제>

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
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
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
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 하
지 아니 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생 략)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①군수
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
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
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1조(위탁관리) ①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 미리 -----
---- 받아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만일 원상복구 하지 아니한 때
에는 군수가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을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
음)

<삭 제>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 적절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

②군수는 경기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각종 공공요금 등을 자체 납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4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①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관리자가 기부채납 의사를 표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음)

②-----

----- 수탁
자는 각종 공공요금 등을 자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는 조명시설이 설
치되어 있는 경기장에 한하여
전기료 기본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①-----
받아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

제안이유

- 가. 주민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종목별 해당 클럽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 관리하고 있으나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기장은 전기요금 과다 지출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나. 상위법령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이용료 및 감면 규정과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12조)
- 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및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를 지자체도 시설관리에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 (안 제17조제2항)
- 다. 군수는 경기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각종 공공요금 등을 자체 납부 하여야 한다” 를 “수탁자는 각종 공공요금 등을 자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기장에 한하여 전기료 기본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개정(안 제21조)
- 라. 정선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수강료 명시 (안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62호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선군농업회의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 설립한 법인
2. 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3조(적용범위) 정선군농업회의소(이하 “농업회의소”라 한다) 운영·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회의소가 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군의 농업(이하 “농업”이라 한다)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군수는 농업회의소의 지속적 운영으로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범위는 농업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조직 및 인력운영
2. 제6조에 따른 수행사업

3. 국가 또는 강원도의 대행사업 알선·지원, 군의 업무위탁 및 대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회의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출연사업의 대상은 농업회의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해당 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 및 건의, 제5조의 추진사업에 관한 의견제시
2. 조사 및 연구,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3. 지도·상담·교육 참여, 기술·기능의 보급과 검증, 지역축제·간담회·전시회·각종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4.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 및 전문성 제고
5. 유관기관 또는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위탁 등) ① 군수는 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농업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농업회의소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을 받은 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① 농업회의소는 제6조에 따라 지원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농업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등을 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위탁 등을 받은 농업회의소에 대하여 그 사업·업무와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게 하거나 검사·점검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농업회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준용) 농업회의소 운영·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3.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4.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2017년 12월 정선군 농업회의소가 설립됨에 따라 성공적 정착으로 정선군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을 농업회의소 지원

나. 농업인 및 비영리법인의 정의(안 제2조)

다. 정선군농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정선군의 책무(안 제4조)

- 농업회의소가 군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지원시책 마련

라. 사업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9조)

- 추진사업 및 지원대상 사업, 업무위탁의 범위, 지원 결과에 관한 사항 등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63호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6. “특정계층”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4의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신혼부부를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분야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인구정책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정선군의회의회장이”를 “정선군의회에서”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별표 2의 공공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분야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구늘리기 지원시책 담당부서 및 분야별 총괄부서(제6조 관련)

구분	사업명	지원기준	담당부서
1. 임신·출산 지원	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보건소
	나. 임산부 건강교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다.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라.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마. 난청조기진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환아 관리		
	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등	주민생활지원과
	아. 긴급복지 해산비(해산급여)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장애인복지법	
	차.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법	
	카.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특례법	여성청소년과
	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지역경제과
	파. 출산장려금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청소년과

구분	사업명	지원기준	담당부서
2. 보육·교육지원	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	여성청소년과
	나. 영유아보육료		
	다. 방과 후 보육료		
	라. 누리과정 보육료	유아교육법	
	마.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	
	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사. 다자녀(셋째아) 가정 고교수업료 및 대학등록금 지원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아.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자.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원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카.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복지법	
	타. 국가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소
	파. 친환경 학교급식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농업기술센터
	하.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	축산법, 낙농진흥법,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3. 귀농·귀촌인 지원	가.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농업기술센터
	나. 귀농·귀촌인 농업기반시설 지원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다. 귀농·귀촌인 빈집 수리비 지원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라. 귀농·귀촌 현장실습(기초영농 기술) 교육지원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4. 다문화가족 지원	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여성청소년과
	나.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지원법	
	다. 통·번역 서비스 제공		
	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구분	사업명	지원기준	담당부서
5. 사회적 소외 계층 지원	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주민생활지원과
6. 전입지원	가. 전입세대 화암관광지 무료 입장카드 배부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민원봉사과
	나. 정선아리랑상품권 지급		
	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라. 기초건강검진		
	마. 군 장병 등 지원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7. 분야별 총괄 부서	가. 일자리분야		지역경제과
	나. 주거분야		도시건축과
	다. 임신·출산 분야		보건소
	라. 보육분야		여성청소년과
	마. 교육분야		여성청소년과
	바. 귀농·귀촌 분야		농업기술센터
	사. 전입분야		민원봉사과
	아. 사회적 소외계층 분야		주민생활지원과
	자. 성평등 분야		여성청소년과
	차.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자치행정과
	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분야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사무분장 관련 부서
	8. 인구늘리기 총괄부서: 자치행정과		

[별표 2]

세 부 지 원 기 준 (제7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적용기준	지 원 내 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관내 관광지 입장카드 배부	전입신고 시	○ 대상: 전입세대 ○ 화암관광지: 관람료 전액 면제 - 1회 유효 / 8인 가족 면제, 1세대마다 1매 지급 ※ 단 9인 이상 시 인원 확인 후 추가 지급 ○ 회동솔향캠핑장: 사용료 면제 - 1회 유효 / 데크1면에 대한 사용료 면제, 1세대마다 1매 지급 ○ 배부처: 읍·면	민원봉사과 (읍·면)
이웃사촌상품권	전입신고 시	○ 대상: 전입세대 ○ 배부기준 - 1세대마다 1회에 한하여 정선아리랑상품권, 50,000원 지급 ○ 배부처: 읍·면	민원봉사과 (읍·면)
쓰레기봉투 지원	전입신고 시	○ 대상: 전입세대 ○ 배부기준 - 1세대마다 1회에 한하여 20ℓ / 20매 지급 ○ 배부처: 읍·면	민원봉사과 (읍·면)
기초 건강검진 지원	전입신고 시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 대상: 전입세대 중 20세 이상 전입자 ○ 접수: 보건소 진료실 ○ 내용: 기초건강체크, 혈액 검사, 체지방검사 등 ○ 장소: 보건소·고한사복지소	보건소 (읍·면)

지원분야	적용기준	지 원 내 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시	○ 대상: 출산일 기준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가 출산 후 계속하여 정선군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 ○ 지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을 전제로 12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 -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정선군에서는 그 이후 6개월 동안 월 40만원 지급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 월 80만원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정선군에서는 그 이후 1년 동안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 지급 ○ 지급처: 지역경제과 ○ 지급방법: 계좌입금	지역경제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전입세대 신청 시	○ 대상: 전입세대 ○ 지원: 전입세대마다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각 1대 (5만원 이하 지원) ○ 배부처: 읍·면	안전건설과 (읍·면)

지원분야	적용기준	지 원 내 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공공 국민임대 주택 보증금 지원	특정계층 (중소기업근로 자 및 북한이탈주민)	○ 대상: 정선군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및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세대)가 전입할 경우, 거주 이전에 따른 정부지원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세대 중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및 전입세대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지원 - 정선군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및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세대)가 전입할 경우 임대보증금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거주 이전에 따른 정부지원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단, 타시군 전출, 중소기업 이직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 상실 시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지역경제과
	특정계층 (신혼부부)	○ 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및 혼인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단, 신청일 기준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일 경우 지원 ○ 지원 - 신혼부부에게는 임대보증금을 50% 이내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 단, 지원기간 중 부부 모두 타시군 전출, 이혼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 상실 시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도시건축과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6. “특정계층”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4의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신흥부부를 말한다.
<u>제3조 (생략)</u>	<u>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u>
<u>제4조 (생략)</u>	<u>제3조 (현행 제4조와 같음)</u>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인구늘리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련되는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 9. (생략) <u><신설></u> 10. (생략) <u><신설></u>	제5조(추진사업)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분야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군수는 인구정책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9조(구성)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위촉직위원을 인구늘리기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제9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하며, 당연직 위원을 자치행정과
장 및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 해당
부서장 중에서 임명한다.

1. ~ 3. (생 략)

4.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생 략)

④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4. 정선군의회에서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군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공임대주택”과 “특정계층”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
- 나. 추진 사업에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분야를 추가하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구정책 홍보 및 인식개선 홍보물품 제작·배포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5조)
-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선군의회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안 제9조)
- 라. 공공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신혼부부 등 지원대상자 기준 신설(별표 2)
- 마. 2017년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지원시책 담당부서 중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별표 1)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64호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공립학교” 를 “국공립학교”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회” 를 “한 차례” 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11조 중 “청취하거” 를 “듣거” 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신청자를 영위하는” 을 “신청자가 운영하는”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아니하는” 을 “않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다.” 를 “하지 않는다.” 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얻은 경우에는” 을 “받은 경우는”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명” 을 각각 “처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명령” 을 “처분” 으로, “아니하는” 을 “않는” 으로, “아니한” 을 “않은” 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 를 “않다.” 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4호” 를 “제3호” 로, “제한하여야 한다.” 를 “제한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정선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 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u>한하여</u>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4조(보조대상 사업) ----- ----- ----- ----- <u>한정하여</u> ----- ----- ----.
제5조(예산의 편성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 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해마다 <u>안</u> <u>전행정부장관이</u> 정하는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④ (생 략)	제5조(예산의 편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행정안전부장</u> <u>관</u>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설치) ①·② (생 략)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 원(「고등교육법」에 따른 <u>국·</u> <u>공립학교</u> 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6조(위원회 설치)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u>국공립학교</u> ----- -----

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서로 뽑으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과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생략)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한 차례-----

----- . <단서 삭제>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필요-----
-----.

제11조(의견청취 등) -----

듣거-----
-----.

수 있다.

제1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4조(보조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 9. (생략)

제16조(교부조건) ① (생략)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

제1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없으면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조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신청자가 운영하는-----

2. ~ 9. (현행과 같음)

제16조(교부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는 -----

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생략)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③ (생략)

제21조(실적보고) ① ~ ③ (생략)

-----.

③ -----

----- 하지 않는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는다. -----
----- 받은 경우는 -----.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

----- 아니 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실적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6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

<삭 제>

제26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 처분 -----

-.

④ -----

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생략)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생략)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처분-----.

⑤ (현행과 같음)

⑥ -----

---- 처분----- 않는 -----

----- 않은 -----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아니 된다. -----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 않다.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 행
정안전부장관-----
-----.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제3호-----

----- 제한
할 수 있다.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과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과제로 발굴된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 어려운 한자어,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개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28조, 제29조)

- 보조대상 사업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추가
- 정부조직법 개정예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개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 삭제
- 보조금의 교부 제한은 군수 재량사항으로 ‘제한할 수 있다’ 로 개정

나. 규제개선 정비과제로 발굴된 조문 개정(안 제21조, 제26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교부 제한 규정 삭제
- 불명확한 사유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삭제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정비

- 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7조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65호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보증채무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수는 제2조에 따라”로, “군이 보증”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를 “정선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군수에 게”를

“군수에게”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에” 를 “미리” 로, “채무 의” 를 “채무의”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라” 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3조에 따른” 으로, “교부한다” 를 “발급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3항에 따른” 으로, “교부되었” 을 “발급되었”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변경 코자” 를 “변경하고자” 로, “제2조 내지 제4조” 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증채무 관리)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 관리한다.

제7조제1항 중 “변제기간내” 를 “변제 기간 내” 로, “경우 에” 를 “경우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를 “제1항에 따라” 로, “지방의회 회의 의결을 얻어” 를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정 선 군 수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정선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보증채무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정선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 사항

4. 준수사항

가. 정선군수가 정선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조사 관리할 때 주채무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자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정 선 군 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선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계획
7. 담 보
8. 용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정선군수가 정선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조사 관리할 때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자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정 선 군 수 귀하

채 권 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응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정선군수가 정선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조사 관리할 때 채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정 선 군 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군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정선군수가 정선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조사 관리할 때 채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보증채무 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주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 호-----.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참고서류	3. 그 밖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군수는 제2조에 따라 ----- -----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u>제3조의 규정</u> 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u>군수에</u>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u>제2항의 규정</u> 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 <u>제3조에 따른</u> ----- ----- ----- ----- <u>군수에게</u> ----- ----- . ----- <u>제2항에 따라</u> ----- ----- .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u>사전에</u> 주채무자에 대하여 해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를 위해 가능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u>미리</u> ----- ----- <u>채무의</u> ----- ----- . <u>다</u> <u>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u>
③군수는 <u>제1항의 규정</u> 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u>제3조의 규정</u> 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u>교부한다</u> .	③---- <u>제1항에 따라</u> ----- ----- <u>제3조에 따</u> <u>른</u> ----- ----- - <u>발급한다</u> .
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u>제3항의 규정</u> 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u>교부되었을 때</u> 발생한다.	④----- <u>제</u> <u>3항에 따른</u> ----- <u>발</u> <u>급</u>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①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u>변경</u>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①----- ----- ----- <u>변경하고자</u> -----

현행	개정안
<u>코자</u> 할 때에도 <u>제2조 내지 제4조</u>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u>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u>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u>제1항의</u>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u>지방의회 회의 의결을 얻어</u>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u>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2조부터 제4조까지</u>----- --. ② (현행과 같음) <u>제6조(보증채무 관리)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 관리한다.</u> <u>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u>----- <u>변제 기간 내</u>----- ----- <u>경우에</u> ----- ----- ----- --. ②---- <u>제1항에 따라</u> ----- ----- ----- <u>군</u> <u>의회의 의결을 받아</u> ----- -----. <u>제8조(시행규칙)</u> ----- <u>필요</u>-----.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개정 등의 변경사항과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 어려운 한자어,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1조)

나.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안 제6조)

- 채권자에게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매년 4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군수가 관리하도록 개정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휘 정비

-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66호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를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군에서 관광진흥을 위해 설립한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결합된 상품을”로 한다.

제3조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포상”을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한다.

제27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관광자원 개발사업) 군수는 법 제48조 및 제48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산업시설, 자연생태 등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사업
4.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28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이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0조(중전의 제27조)제2항 중 “·정선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를 “「정선군 포상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8장(제2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관광사무 위탁

제29조(위탁업무)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 홍보, 마케팅
2. 관광분야 민간교육이나 연수운영
3.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 사업
4. 군민이 참여하는 보조사업
5. 그 밖의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의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우선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한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0조 앞에 “제9장 포상”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문화관광해설사”란 <u>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u> ·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자(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말한다.	1. -----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관광사업자”란 <u>관광진흥법</u> ·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군에서 관광진흥을 위해 설립한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5.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5. ----- -----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결합된 상품을 --.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u>조례가</u>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 ----- <u>조례로</u> ----- -----.
제6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업무)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2. ~ 5. (생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

제13조(위탁 운영) ① (생 략)

② 콜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지원금의 반환) ① (생 략)

③ (생 략)

제7장 포상

<신 설>

<신 설>

지와 같음)

제13조(위탁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은 -----

----- 따른다.

제26조(지원금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장 관광자원 개발 등

제27조(관광자원 개발사업) 군수는 법 제48조 및 제48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산업시설, 자연생태 등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사업
4.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28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이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장 관광사무 위탁

제29조(위탁업무)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 홍보, 마케팅
2. 관광분야 민간교육이나 연수운영
3.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
여행 사업

4. 군민이 참여하는 보조사업
5. 그 밖의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의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우선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한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u><신 설></u> <u>제27조(포상) ① (생 략)</u>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은 <u>· 정선군 포상조례 ·</u>를 준용한 다.	<u>조례」를 따른다.</u> <u>제9장 포상</u> <u>제30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u> ② ----- <u>「정선군 포상조례」를 따른다.</u>
--	--

제안이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관광사업자 및 관광 상품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보조근거를 마련함
(안 제27조, 제28조)
- 다. 관광사무 위탁업무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29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반영함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13조, 안 제26조, 안 제30조)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67호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존치”를 “보존”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 중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를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란하게 하는”을 “어지럽히는”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정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정) ① 마을관리휴양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제3조(지정) 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마을관리휴양지 폐지 및 구역 변경) ① 군수는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따라 마을관리휴양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u>준치할</u>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마을관리휴양지 폐지 및 구역 변경) ① ----- ----- ----- <u>보존</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관리) ① ~ ③ (생략)	제5조(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u>연장</u> 또는 <u>단축</u> 할 수 있다.	④ ----- . -- ----- <u>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 ----- <u>사람</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생 략)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
람
4. · 5. (생 략)

제9조(시설이용료의 환부) 이미 납
부된 시설이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
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8조(입장거절 및 퇴장) -----

--.

1. 감염병 ----
2. (현행과 같음)
3. ----- 어지럽히는 -----
4. · 5. (현행과 같음)

제9조(시설이용료의 환부) -----
----- 않는
다. -----
----- 경우는 -----.

제11조(준용) -----
-----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를 우리말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관련 조문을 개정함(안 제5조제4항)

- 행정재산 관리위탁 2회 이상 갱신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갱신함

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3조제1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반영함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68호

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선군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과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종합적 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본인과 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설치 및 업무

제4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제공과 연계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보건소에 둔다.

② 센터를 보건소에 두지 못할 경우, 군 지역 중에서 군민의 접근성과 공공성이 확보되

는 편리한 곳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업무 및 시설) ① 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
2. 방문·전화 등 사례관리 및 가족 교육 지원업무
3.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조사·연구 및 지역사회자원 개발업무
4. 자살 및 자살시도 예방, 유가족 관리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의 군민행사 추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장애종류별·정도별·성별·재활시설
2. 종합정보실
3. 홍보 및 상담실
4. 복지시설 운영연계 및 지원실
5. 그 밖에 편의 및 부대시설

제6조(조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醫), 정신건강 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센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수행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직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하면 해당 수탁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급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④ 센터장과 직원의 정수, 복무, 보수, 업무분장 등 센터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장 개관·휴관 및 이용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 외에는 개관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보수·수리 등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휴관하는 날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변경사항은 군 및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제8조에 따른 개관일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변경·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통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3항에 따른다.

제9조(이용대상) 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군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군 소재 복지시설·단체 등의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전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센터의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지도·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
4.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료 및 이용제한) ① 이용자는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제11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비용 부담 및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① 군수는 법 제79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의료비 경감 및 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자기 부

담금을 지원 받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부담하지 않는다.

제4장 위탁운영

제13조(대상기관·단체) 군수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운영 할 경우 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

제14조(협약체결 및 위탁기간) ①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경쟁수탁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선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협약사항 등)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협약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각각 “계약”은 “협약”으로 본다.

1.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
2. 재위탁의 절차·방법
3. 위탁운영경비의 보조
4. 수탁자의 의무, 명의 및 책임
5. 지도·감독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제5장 보칙

제16조(비밀엄수) 이용자, 수탁자 등은 센터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수행 중에도 법 제71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기존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정선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업무 규정(안 제4조~제6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개관·휴관 및 이용에 대한 규정(안 제7조~제12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13조~ 제15조)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69호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높이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위치) 콜센터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또는 군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관광안내 포함)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원의 준수사항) ① 콜센터 상담원은 민원을 신속·정확하고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하면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담원의 준수사항 및 민원인 대응을 위한 지침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군수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으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교육실, 휴게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제7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콜센터 운영의 위탁을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선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위탁의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⑤ 콜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해당 위탁업무의 성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⑥ 콜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협약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각각 “계약”은 “협약”으로 본다.

1.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
2. 재위탁의 절차·방법
3. 위탁운영경비의 보조
4. 수탁자의 의무, 명의 및 책임
5. 지도·감독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제8조(비밀엄수)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안이유

전문상담원의 민원상담으로 그간 전화 돌림, 반복 질문 등 전화민원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속·정확,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민원상담 콜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규정(안 제4조)
- 나. 콜센터에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의 규정(안 제6조)
- 다.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방법 규정(안 제7조)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70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 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정선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정선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로 한다.

제37조 제목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을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의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주차장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료의 80퍼센트

제45조 중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생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u>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u> 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 ----- -----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u>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	<삭 제>
1. <u>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u>	
2. <u>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u>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
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5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
 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정선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정선군 주차
 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선
 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
 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
 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
 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생략)

<신설>

제35조(위탁관리) ①-----

 -----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
을 징수할 경우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의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
을 다음 각 호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1. 공유재산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주차장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료의 80퍼센트

제45조(지방세의 준용)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안이유

-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조항 신설
나. 법률 상 근거가 없는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가능조항 삭제 및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근거 법령 수정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4조제3항)
-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부장관
나.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항 삭제
다. 공유재산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안 제37조제2항)
라.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법령 수정(안 제45조)
-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71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 중 “지속가능하게”를 “지속 가능하게”로, “적극”을 “적극적으로”로 한다.

제8조제6항 본문 중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을 “때는 회의개최 5일 전”으로, “통지하여야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3분의2”를 각각 “3분의 2”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선아리랑시장
2. 고한구공탄시장

제11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북시장
4. 임계사통팔달시장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태백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정선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6. 군 도매업·소매업 업무 담당과장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가능한 한”을 “가능하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제1장 <u>총 칙</u>	제1장 <u>총칙</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u>지속가능하게</u>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u>적극</u>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 ----- <u>지</u> <u>속 가능하게</u> ----- ----- <u>적</u> <u>극적으로</u> -----.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 ⑤ (생 략)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u>회의개최 5일전까지</u>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u>통지하여야한다</u> .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⑥ ----- <u>때</u> <u>는 회의개최 5일 전</u> ----- ----- <u>통지하여야 한다.</u> ----- ----- -----.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u>3분의2</u>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u>3분</u>	⑦ ----- <u>3분의 2</u> ----- <u>3분의</u>

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 ⑨ (생 략)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이하 "지정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신 설>

2 -----.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

1. 정선아리랑시장

2. 고한구공탄시장

3. 사북시장

4. 임계사통팔달시장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
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
격이 있는 사람

2. 태백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정선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6. 군 도매업·소매업 업무 담당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생략)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 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과장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가
능하면 -----

-----.

제안이유

-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관련 내용 반영
-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조항 신설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4호)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별표
- 나.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관련 내용 반영(안 제11조제1항)
-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항 신설(안 제14조의3)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72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5조제4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u>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u>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u>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 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u>아니</u> 된다.	④ ----- ----- 안 ----.

제안이유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이와 중복되는 교육환경 평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37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인용 제명을 변경하고 해당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73호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

6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정선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 ----- ----- ----- ----- ----- ----- ----- ----- -----.
1. ~ 2. (생략)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	1. ~ 2. (현행과 같음) 3. ----- ----- ----- 제 16 조 의 5 제 1 항 제 1 호 ---- ----- ----- -----

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
 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
 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
 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
 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
 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
 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
 기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
 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
 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
 제)

 -----제16조의5제1항제1호

 -----.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정선군수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안이유

이 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로 표기되어 있으나 오류 표기로 “제16조의5”로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 “제16조의5”로 수정

나.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안 제3조제1항제3호),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안 제5조)

-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
⇒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수정

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 각 서식에서 “제16조의4” ⇒ “제16조의5”로 수정

제249회 정선군의회(2018.10.30.)에서 의결된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74호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집단으로 하여금”을 “집단이”로, “교 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개선시키”를 “개선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3인이내”를 “13명 이내”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협의를”을 “협의회의”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업무관련담당주사”를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u>	<u>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보건교육 : 개인 또는 <u>집단</u> 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u>교육</u> 을 말한다.	2. ----- <u>집단</u> 이 ----- ----- <u>교육</u> ----- -.
3. 영양개선 :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u>개선</u> 시키는 것을 말한다.	3. ----- ----- <u>개선</u> 하----- -----.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u>1인</u> 을 포함한 위원 <u>13인</u>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1명----- <u>13명</u> 이 내-----.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u>각호</u> 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의한다.	제4조(기능) ----- <u>각 호</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1조</u> 규정의 심의 사항	<삭 제>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①회장은 <u>협</u> 의는 의장이 된다.	제5조(회의) ①----- <u>협의회의</u> ----- -----.

② ~ ④ (생 략)

제6조(임기) 회의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간사는 업무관련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7조(수당 및 여비) -----
----- 범위 안--

---.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업무관련 담당주사-----
-----.

제9조(운영세칙) -----
관-----
-----.

제안이유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 나.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개정(안 제4조제2항)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한 군수 자문 규정 삭제
- 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발굴된 조문 개정(안 제5조제1항)
문법상 오류에 따른 문구 수정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정비